

## Client Alert

May 2016

## 말레이시아 물가 통제 및 가격 인상 방지 (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시행 이후 1년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Adeline Wong  
+603 2298 7880  
[adeline.wong@wongpartners.com](mailto:adeline.wong@wongpartners.com)

Krystal Ng  
+603 2298 7937  
[krystal.ng@wongpartners.com](mailto:krystal.ng@wongpartners.com)

기소예 부장, 한국 기업 지원  
+603 2298 7903  
[Soyeh.Ki@WongPartners.com](mailto:Soyeh.Ki@WongPartners.com)

물가 통제 및 가격 인상 방지 법 2011 (Price Control Anti-Profiteering Act 2011, 이하 "PCAP")은 말레이시아의 물품 및 서비스세 (이하 "GST") 제도 도입에 따라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의 비합리적인 인상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PCAP법에 의하면,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은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말레이시아 국내 통상 및 소비자부 (Ministry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이하 "MDTCC")에서 집행합니다.

말레이시아에 PCAP 법이 시행된 지 일년이 지난 바, 지난 일 년간 PCAP 관련 민원 현황 및 MDTCC이 취한 조치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익이라는 판단

물가 통제 및 가격 인상 방지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익이라는 판단을 위한 메카니즘) (순이익률) 규정 2014 (Price Control and Anti Profiteering (Mechanism To Determine Unreasonably High Profit) (Net Profit Margin) Regulations 2014, 이하 "Regulations 2014")은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익을 판단하는 기간을 2015년 1월 2일에서 2015년 3월 31일까지, 또한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된 포물라를 적용할 때 물품 및 서비스의 순이익률이 인상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방지 집행 조치

2016년 6월 30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MDTCC PCAP 및 Regulations 2014에 근거한 조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취한 조치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 1월: 핸드폰을 판매하는 회사가 핸드폰 심카드의 가격을 RM10에서 RM12로 인상하는 데 충분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민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RM10,000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6년 3월: 슈퍼마켓의 운영자는 꿀 가격을 RM28.90에서 RM43.99로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에 대한 두번째 범법 행위로 판결받아 벌금 RM30,000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운영자는 이전에 야채 가격을 Kg당 RM3.10에서 RM9.70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으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 2016년 4월: 미니 마켓의 운영자는 인스턴트 라면의 가격 인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민사법원으로부터 RM5,000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 2016년 5월: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은 나시레막 (nasi lemak)의 가격을 RM2.50에서 RM3.50으로 인상하는 데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민사법원으로부터 RM4,000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 가격 책정

많은 말레이시아 국내 사업가들이 Ringgit의 가치 하락, 물품 구매가 및 사업 운영비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증대된 비용의 일부를 가격 인상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GST 법의 도입 뿐 아니라 PCAP 및 Regulations 2014의 도입에 따라, 높아진 소비자 인식은 MDTCC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가격 질의를 하는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물품의 가격 책정에 있어 만반의 준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Regulations 2014에서 규정된 규칙들과 포물라는 2016년 6월 30일에 소멸되거나 혹은 MDTCC에 의해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개월의 과도기는 (2015년 1월 2일에서 2016년 6월 30일) 호주 등 다른 사법권의 과도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호주의 경우,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호주에서 GST 를 도입한 이후 3년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소비자 가격 감시제를 실행함으로써 GST 도입에 따른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관리하였습니다.

\*\*\*\*\*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기소예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Wong & Partners 에게 있습니다.부분 혹은 전문 인용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www.wongpartners.com](http://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Suite 21.0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